

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

① 대상

- (건설현장) ①'25년(발생일 기준)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, ②'24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(노력도)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, ③'24년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.5배 이하인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

* 단,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

** 공동수급(컨소시엄) 현장의 경우 주관사를 기준으로 판단

- (컨설팅 기관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

<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>

- 120억 이상 1,5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건설·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
- 1,500억 이상 3,0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·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
- 3,000억 이상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

※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

② 신청 및 심사

- 신청서 접수: **2026. 8. 24.(월)까지 고양지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** 제출
-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컨설팅 계획·내용,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및 컨설팅기관 평가등급 등 종합하여 심사(승인 또는 불승인) 후 심사 결과 통보

③ 이행 절차

- 컨설팅기관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우리 지청 승인 후 컨설팅 이행
- 기관 소속 외부전문가(2인1조)가 월 15개 이하 컨설팅 실시
- 매월 1회 컨설팅 실시, 매분기 말일까지 이행결과 제출

④ 기타

- 제출된 안전조치 개선결과 보고서 검토결과 컨설팅 부실(개선실적 미흡 포함) 하다고 판단*되는 경우 자율안전관리 승인 취소 조치
* 계획서 이행 여부, 컨설팅내용의 적정여부, 컨설팅 및 본사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통해 판단
- 중대재해(1건 이상)가 발생한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 승인 취소 및 컨설팅 기관 컨설팅 내용 적정여부 조사 예정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

<붙임1>

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심사내용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신청대상 적격성	- 공사금액(120억원 이상) - 사고사망만인율(평균 0.5배 이하), 산재예방실적평가(70점 이상) - 컨설팅 전문가 적정성, 착공 이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
컨설팅계획 충실성	- 컨설팅 기간에 맞는 취약시기별, 공종별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- 공종별 컨설팅 수행시기의 적정성 - 컨설팅 관리의 적정성 - 자율안전 컨설팅 점검표 적정성 및 현장에 부합한 대책 마련 등 - 컨설팅 시 점검사항에 대한 현장 개선여부 확인(기관)
사업장 개선의지	-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- 공종별 작업 위험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여부 - 컨설팅 후 지적 사항 개선 여부(현장)
가점	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별 가·감점 부여 - S → A → B 차등 가점 부여 C등급(평가 결과 없는 기관 포함) 가점 미부여, D등급 감점 부여

-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승인 예정(일정 별도 공지)
- 필요시 현장 관계자 면담 실시